교회법

law church
제16호

http://www.churchlaw.co.kr
law134@naver.com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0 (베네치아의 아침 오피스텔 1208호) (031) 984-9134

• 교회법 통권 제16호 • 발행인 : 소재열 • 발행처 : 한국교회법연구소 • 발행일 : 2022. 5. 10.

한국교회법연구소 THE KOREA INSTITUTE OF CHURCH LAW | RN 리폼드뉴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리폼드

• 한국교회법연구소 사업자번호 : 119-82-83446
• 기업은행 657-020624-04-018 (예금주 : 한국교회법연구소)

▲제48회 총회(1963), 총회장 이수현 목사

헌법 정치 제12장 2조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써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10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를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로 개정하기로 하고 각 노회에서 수의하여 개정 성수가 될 때에 제49회 총회 이전 임원회에서 총회장의 명의로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기로 가결하다.

총회 총대 숫자 줄여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8회 총회(합동)가 1963년 9월 19일에 서울 인사동 승동교회 예배당에서 개최하여 이수현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때 총대는 총 184명이 참석했다. 당시 전국 노회는 31개 노회였다. 이때 10 당회당 목사와 장로 각 1명씩 파송하였는데 제48회 총회에서 7 당회당 목사와 장로 각 1명씩 파송하는 교단 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결

제49회 총회(1964)는 고신 측이 환원해 떠난 상황에서 목사와 장로 총대를 합하여 214명이었다. 이는 7 당회당 목사와 장로 각 1인이 파송되었으며, 전국 노회는 30개였다. 그러나 현재 전국 노회는 164 노회이며, 총대는 무려 1,600명에 이른다. 총대 200명 선일 때 총대 파송 기준은 7 당회였지만 지금은 10 당회로 다시 환원하여 현재 1,600명 총대를 1,000명 전후로 조정하되 제48회 총회처럼 헌법을 개정하면 된다. 총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총대를 조정해야 한다.(*)

교회 자율권 유지와 분쟁 예방을 위한 정관 정비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교회 자율권과 교단 자율권 충돌
   1) 교단 자율권이 지교회 자율권 보다 우선
   2) 교단 자율권 우선의 판례
   3) 교회 자율권 우선의 판례
   4) 교회 정관주의
3. 교회 자율권 보장을 위한 정관 정비 필요
   1) 공동의회 소집권자 규정 정비
   2) 담임목사 배척한 교인 제재
   3) 담임목사 지위 박탈
   4) 교단 탈퇴를 막는 극약처방의 정관 정비
   5) 당회에 재산처분 전권 위임은 위험
   6) 공동의회에 재산처분 규정을 둘 경우
4. 나가는 말

〖 **요 약** 〗

교회는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므로 대한민국 헌법과 각종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단체인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자유에 근거한다.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자유에 근거한 개별교회는 교단의 소속 관계가 형성된다. 개별교회와 소속 교단은 민사법적으로 계약에 의한 쌍방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단은 개별교회를 종속관계로 보려는 유혹을 받는다. 한번 교단에 가입하면 교단은 개별교회를 하수인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쌍방의 계약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다. 교단의 자율권 존중 법리는 종속적 개념은 결코 아니다.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은 상호 존중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지나친 강조와 법 집행은 서로를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고 법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판례법리를 확정하여 전국 법원의 판례법리로 자리 잡아 간다. 교단의 자율권에 대항하기 위한 교회의 자율은 교회 정관이다. 이제 많은 법리와 판례가 학습되면서 교단의 지나친 압력과 갑질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법리가 학습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를 지킬 수 있다.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는 법인데 마치 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은 잘못이다.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교인의 뜻이 반영한 회의체가 되기 위한 법리적 접근, 교회 재산 중에 부동산 처분에 대한 위험한 상황들을 예견하여 이를 교회 정관으로 잘 정리해야 한다. 이 길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소재열** 목사 /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 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D.Min., 교회법), 칼빈대학교(Ph.D.,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 법학박사(민법),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서로 「헌법 정치, 권징조례 해설」, 「교회의 표준 회의법」, 「교회의 적법절차」, 「신비의 계시 로마서」 외 다수.

1. 들어가면서

교회는 다양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다. 그 분쟁은 더욱 심화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교회 분쟁은 개별교회와 교단과의 관계에서 교회 대표권 문제, 교회 무흠 입교인으로 구성된 교인총회 결의에 대한 적법성 여부, 교회 재정과 재산에 관한 문제, 교인 지위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이어지자 교회 재산권을 가진 교인의 수가 줄어들어 교회 재산처분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

교회 담임목사의 비위로 인한 분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소속 노회의 간섭으로 지교회가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다. 지교회 담임목사 임면권(任免權)을 가진 소속 교단인 노회가 담임목사직을 정치적으로 제재하면서 교회 교인들과 갈등으로 분쟁이 악화하는 예도 있다. 특히 교회 정관에 아무런 의심 없이 교회 재산처분을 당회에 전권 위임하는 정관을 제정하는 데 동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회 재산처분을 공동의회 결의로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당회에 재산처분권을 위임한다. 대법원 판례는 교회 재산처분에 대한 방법으로 교회 정관에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을 경우, 당회가 재산을 처분할 때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런 이유로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합세하여 교회 정관 제정 시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악하게 이용하여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재산권을 가진 교인들이 줄어들자 당회가 임의로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담임목사는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되어 교회 중요 결정을 하는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소집권자가 된다.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할 경우, 교인들은 교인총회를 소집할 길이 없다. 이때 담임목사는 노회와 연대하여 담임목사를 저항하는 자를 정치적으로 매장해 결국 출교시킴으로 교회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교회 정관으로 이러한 담임목사의 비위에 소속 교단과 공동의회 소집권자인 담임목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인들만의 결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교회 정관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가능한 법리를 이해하고 정관을 정비한다면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특정인들의 권력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회의 자율권은 교단의 자율권에 의해 제한을 받도록 했다. 즉 교회의 자율권은 교단의 자율권에 무너진다. 이때 지교회는 교단 앞에 속수무책이 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판결도 교회 정관을 인정하여 정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교회 정관 중심의 대법원 판례는 지교회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이 얼마나 요긴한 법리인가? 이제 교회는 교인 중심의 교회 자율권은 담임목사를 비롯한 특정인들의 권력 독점을 견제할 수 있다. 반대로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인 노회와 합세하여 목회를 잘하고 있는 지교회 담임목사 지위를 박탈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담임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는 문제 역시 교회 정관으로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이런 형식의 정관변경을 거부할 경우, 다수 교인은 법원에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얼마든지 특정인들의 교권 독주를 막아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교회 자율권과 교단 자율권이 충돌할 때

1) 교단 자율권이 지교회 자율권 보다 우선

교회는 특정 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단독(독립)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 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교단을 구성하여 다른 지교회의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여기서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한다. 교단에 소속된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 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양 종교단체인 교회와 교단은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고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법원은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1]

2) 교단 자율권 우선의 판례

지교회가 소속된 교단 헌법에는 교인들에 의한 목사해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단 헌법의 금지규정은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2] 교단 헌법에 재판절차에 따르지 않는 이상 교인들의 의결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한 경우, 교단 헌법

---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참조.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례.

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교회는 교단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교단 자율권이 지교회 자율권에 제한을 받는다면 교단의 존립 목적이 훼손된다. 따라서 지교회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지교회 자율권에 우선한다는 판례이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교회 담임목사의 임면권이 교단에 있다. 지교회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청빙할지라도 소속 교단이 승인하지 아니할 때 담임목사 지위 여부가 문제가 된다. 지교회 청빙에 대한 자율권과 이를 승인하는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2019년 대법원 판례[3]는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이라며 지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승인하지 않는 교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판례법리이다. 즉 교단 자율권 우선의 원칙이다. 그러나 1967년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내놓았다.

> 교회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와 그 소속 노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 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4]

2019년 대법원의 지교회 자율권 우선의 판례와 1967년 대법원 판례는 교단 헌법에 반한 지교회 담임목사 청빙은 교단에 대해서는 대표권이 없지만, 교단 이외 제3자에 대해서는 담임목사의 대표권이 있다는 판례는 충돌된 판례이다.[5]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법리를 내놓기도 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에 소속된 원고 교회가 설사 한 개의 교회로서 독자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말단 종교단체라 하여도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종헌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을 무시하고 그 교회를 멋대로 관리 운영할 수 없다.[6]

1982년 대법원 판례는 지교회가 독자적인 종교단체인 지교회는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그 교회를 멋대로 관리 운영할 수 없다고 대하여 지교회 운영과 관리를 위해 담임목사 결정(청빙)은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례이다. 대법원의 1967년 판례와 2019년 판례가 상호 충돌할 수 있으므로 교회는 반드시 정관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충돌된 대법원 판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3) 교회 자율권 우선의 판례

앞서 교단의 자율권이 지교회 자율권보다 앞선다는 판례를 살펴보았다. 즉 지교회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하며, 지교회는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례법리이다. 이러한 판례는 전제가 있다. 지교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판단할 수 있는 판례법리이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특정 내

3)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례.
4)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5) 소재열, 『교회의 적법절차』 (브엘북스, 2021), 767-68.
6) 대법원 1982. 11. 14. 선고 72다1330 판결.

용이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정관 규정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보다 우선한다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다.

>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7]

위의 판례에 의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민법에 따른 "비법인사단으로서 교회의 독립성"에 의해 지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교회 정관이 우선한다는 판례이다. 이 판례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교회의 정관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에 근거하고 있다.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는 판례는 지교회 정관은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의 보류로 판단한 결과이다. 비법인사단으로서 교회 구성원들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종교의 자유와 독립성을 유지할 때 소속 교단이 침해할 수 없다는 대원칙 때문에 지교회 장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지교회 정관이 우선한다는 판례법리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와 민법의 법인 아닌 사단의 독립성을 인정할 때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는 자치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6년 대법원 판례는 유지될 것이다. 이는 2006년 50년 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면서 내놓은 판례법리이다.

4) 교회 정관주의

교회 정관에 특정 내용이 교단 헌법과 충돌하고 그 내용을 달리할 때 교단 헌법이 지교회에 적용할 수 없다. 이는 법원의 일관된 판례법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문제는 교회 정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관이어야 함을 전제한다. 이제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여 교단 소속 지교회로 운영할 때 지교회는 교단 헌법에 반한 정관을 규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소속 교단이 지교회 정관을 거부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라고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 이는 2006년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에서 보여준 정관 제정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로 판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교단 헌법이 아니라 지교회 정관이다. 아직도 지교회 정관을 정비하지 않는 교회는 하루빨리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정비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나 정비할 경우, 법원에 소송할 이유가 적어질 수 있다. 심지어 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

---

7)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교회 자율권 보장을 위한 정관 정비 필요

전술한 대로 지교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회 자율권은 교단의 자율권에 의해 무너진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얼마든지 교단의 정치꾼들에 의해 지교회 운영과 관리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지교회 일부 기득권자들과 교단의 정치꾼들이 결탁하여 얼마든지 재산을 난도질할 수 있다. 예컨대 소속 교단(노회)이 담임목사 지위를 면직 등으로 박탈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다. 일부 교인들이 반항할 때 당회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시당회장으로 구성한 당회가 노회에 위탁판결을 의뢰한다. 노회는 그들을 제명 출교를 처분하여 교회 출입 자체를 금지한다. 이런 방법으로 특정 교권이 지교회 재산을 강탈하는 경우들이 있다. 과연 교회 정관, 무엇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가?

1) 공동의회 소집권자 규정 정비

교단 헌법은 담임목사 임면권(任免權)이 소속 교단인 노회에 있다. 노회가 담임목사를 보호할 경우, 지교회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교인 개인의 의견이 아닌 교인총회의 결의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결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담임목사 또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공동의회에서 결의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교인들과 담임목사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교인들이 정관을 정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때 법원에 전체 의결권자인 교인 3분의 1 서명을 받아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담임목사가 2주간 이내에 응하지 아니할 때 법원의 허락을 받아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이 공동의회 소집을 허락할 때 담임목사가 아닌 소집 청원자 대표자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를 비송사건 절차라 한다.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할 때를 대비하여 아예 정관에 "입교인(세례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으로 회의목적(안건)을 명시하여 담임목사(혹은 임시당회장)에게 요청하였으나 2주간 이내에 소집해 주지 아니할 때 소집 청원 대표자가 직권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하면 법원 비송사건으로 갈 이유가 없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권자이며 소집해 주지 아니할 때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교인들에 의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교단 헌법이 지교회 담임목사, 즉 대표자는 노회가 승인한 담임목사나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된다. 그러나 정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다면 이 정관 규정이 교단 헌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정관에 이런 규정이 없다면 교인들이 임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법원 비송사건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관에 입교인(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 청원을 거부하였을 때 교인들 중심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분쟁은 결

국 담임목사와 결별 수순으로 갈 경우, 이제 법원 소송으로 갔을 때 위법성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면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정관을 구체적으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담임목사 배척한 교인 제재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배척할 때 담임목사는 노회와 연대하여 배척한 자들을 당회에 고소·고발하여 당회가 이를 노회에 위탁하여 제명 출교해 버리면 그들은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시벌했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한다. 담임목사는 자파 교인들에게 당회에 고발하게 하고 당회가 접수를 거부하면 그 고소장인 부전지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하여 제명 출교해 버리면 그들은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출입하면 불법 출입을 원인으로 검찰에 고발하면 형사사건이 된다.

3) 담임목사 지위 박탈

노회가 지교회 교인들의 의지에 반하여 담임목사를 면직하거나 당회장 직을 정지시키고 노회에서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교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표자가 변경되어 버린다. 자신들의 임시 대표자가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담임목사가 결정적인 범죄 사유로 노회로부터 면직이나 당회장 정지를 당하였을 때 교인들이 이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목회를 잘하고 있는 담임목사가 노회 특정 인사들이 지교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담임목사의 대표권을 박탈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 교회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때를 대비하여 교인들의 의지에 반하여 소속 노회가 담임목사의 대표권을 박탈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 앞서 언급한 대로 "입교인(세례교인 3분의 1 청원으로 회의목적(안건)을 명시하여 담임목사(혹은 임시당회장)에게 요청하였으나 2주간 이내에 소집해 주지 아니할 때 소집 청원 대표자가 직권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교단 탈퇴, 임시대표자 선임 등을 결의할 수 있다.

4) 교단 탈퇴를 막는 극약처방의 정관 정비

일부 교회에서 분쟁 예방 차원에서 교회 재산을 교단총회 유지재단 이름으로 등기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분쟁이 예방되지 않는다. 교단총회 유지재단으로 등기하여 관리할지라도 공동의회에서 교회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환원해 달라고 하면 유지재단 이사회는 교회로 등기 이전을 해주어야 한다. 만약에 환원해 주지 아니하면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와 무관하게 법원 판결로 교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한다(본 조항은 불변조항으로 하며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교단 탈퇴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경우 교단 탈퇴는 교회 의결권자 전원이 동의해야 교단 탈퇴가 가능하다. 서울의 모 교회가 노회의 지나친 개입으로 지교회가 분쟁으로 홍역을 치렀다. 절차에 의해 교단 탈퇴를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교회 정관에 교단 탈퇴가 불변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교단 탈퇴를 포기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보통 많은 교회는 이러한 규정을 제정하기에 부담스러워한다. 노회와 교단과 분쟁이 있을 때 교단을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오직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의할 사항이다. 본 내용으로 규정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하면 노회 정치꾼들이 지교회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사례가 있어 경우의 수를 잘 판단해야 한다.

5) 당회에 재산처분 전권 위임은 위험

현행 한국교회의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교회 정관에 재산처분을 당회에 전적으로 위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 어떠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당회에 재산처분권을 부여한 정관을 두고 있다면 심지어 교회 본당도 당회가 처분해도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산의 공동소유권자인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정관 제정 및 변경을 통하여 처분을 당회에 위임해 버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교회 재산처분은 교회 정관에 재산처분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관에 재산처분에 대한 방법이 없다면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서 처분할 수 있다는 처분 방법에 대한 판례법리를 내놓았다.[8]

교회 정관에 당회에 위임하는 재산처분의 범위를 정확히 해 두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처분할 것과 당회에서 처분할 것을 구분하여야 한다. 당회에 재산처분의 전권을 위임해 버리면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8) 소재열, 『교회의 적법절차』 참조.

6) 공동의회에 재산처분 규정을 둘 경우

전술한 대로 교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단 헌법 규정이 적용된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철저하게 이 원칙이 적용된다. 교회 부동산이나 재정에 대한 문제가 교회 정관에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대로 집행하면 된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 재산(부동산)과 관련한 규정이 없을 때는 교단 헌법(합동)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9]

위의 교단 헌법은 교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을 때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교회 교인명부에 등재된 전 재적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전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야 재산(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교회 정관에 재산(부동산) 처분에 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다면 재산처분은 어려운 절차가 동원되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당회에 재산(부동산) 처분을 위임하였다면 교단 헌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교회 정관에 재산(부동산) 처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정관에 이런

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 정치 제21장 제1조 5항.

규정이 없거나 이런 정비가 없는 경우, 공동의회에서 전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재산처분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교회 정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1. 교회 재산인 부동산 처분은 공동의회에서 재적 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목적물을 명시하여 당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부동산이 아닌 재산은 당회가 처분할 수 있다. 단 교회 재정은 예외로 한다.
3. 처분행위가 종결된 후 2주간 이내에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처분으로 인한 재정집행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재산(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족수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처분하거나 당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당회는 공동의회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명시하여 위임해 준 부동산으로 제한한다. 단 부동산이 아닌 교회 자동차 등과 같은 재산의 처분은 당회가 직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규모가 큰 교회는 교회 재산(부동산)을 공동의회에서 처분할 때 어렵다. 이런 교회는 다음과 같이 정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1. 교회 재산인 부동산 처분은 제직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되 정족수는 제직회 의결정족수에 따른다.
2. 제직회는 목적물을 명시하여 당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처분행위가 종결된 후 2주간 이내에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처분으로 인한 재정집행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위임할 때 목적물을 명시하여 위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포괄적 모든 재산처분을 위임한 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다. 당회에 포괄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모 교회에서는 교인들 모르게 20억 원이 재산이 처분되고 그 20억 원을 당회가 임의로 집행해 버리자 이에 대해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정관에 재산처분은 당회에 위임되어 있었으며, 당회가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교인들은 "정관변경 당시 우리는 이를 모르고 통과해 주었을 뿐이다"라고 항변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정관이 이렇게 중요하다. 정관을 이와 관련된 문제로 확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이제는 교회 재산(부동산)이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나가는 말

교회와 소속 교단과의 관계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개입되는가? 지교회(개별교회)가 교인총회(공동의회)를 통하여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여 해당 교단에 가입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특정 교단이 특정 교회를 소속 지교회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결정만으로 안 되고 지교회와 가입하고자 하

는 교단과의 쌍방 결의가 있어야 한다. 즉 지교회의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결의와 이에 교단의 가입 승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가입된 지교회의 담임목사를 교단이 교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박탈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지교회는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정관으로 잘 정비해 두어야 한다. 그 정비는 다른 것이 아닌 가장 중요한 규정인 "입교인(세례교인 3분의 1 청원으로 회의목적(안건)을 명시하여 담임목사(혹은 임시당회장)에게 요청하였으나 2주간 이내에 소집해 주지 아니할 때 소집 청원 대표자가 직권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정비해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정비해 둘 경우, 담임목사는 전횡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목회에 충실할 것이다. "우리 교회 담임목사는 1주일의 절반 정도를 교회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일에도 다른 교회 강사 초청으로 교회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상담을 받곤 한다.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바로 앞서 설명한 규정대로 교인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정관을 정비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정관의 무서움을 안다면 목회자나 장로는 월권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 처분은 형사사건이 되므로 조심할 것이다.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을 때 교회는 혼란과 분쟁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교단 헌법과 충돌된 정관을 정비할지라도 교단은 이를 개정하라고 지시 명령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교단이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교회의 자율권을 인정받고 싶을 때 반드시 정관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규정이 정관에 없다면 교단 헌법이나 총회 결의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교회 자율권과 교단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 자율권이 우선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교회 정관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교단 자율권보다 교회 자율권이 우선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교회 정관은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교단 헌법보다 교회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문제는 교회 정관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 제정 및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정관변경은 위법이 되어 버린다. 즉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관변경과 재산의 공동소유권을 가진 교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교인 지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가 하자일 경우, 정관변경이나 재산처분 결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10)]

교회는 사소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자기중심적, 특정 그룹의 정의 개념은 교회를 파괴하는 정의가 될 수 있다. 이제 정직하게 교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적법한 교회법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데 기본이 될 수 있다. 교회 정관을 법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특정인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비한다면 그 정관이 그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게 할 것이다.(*)

---

10) 정관 제정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교회의 적법절차〉(소재열 자음)를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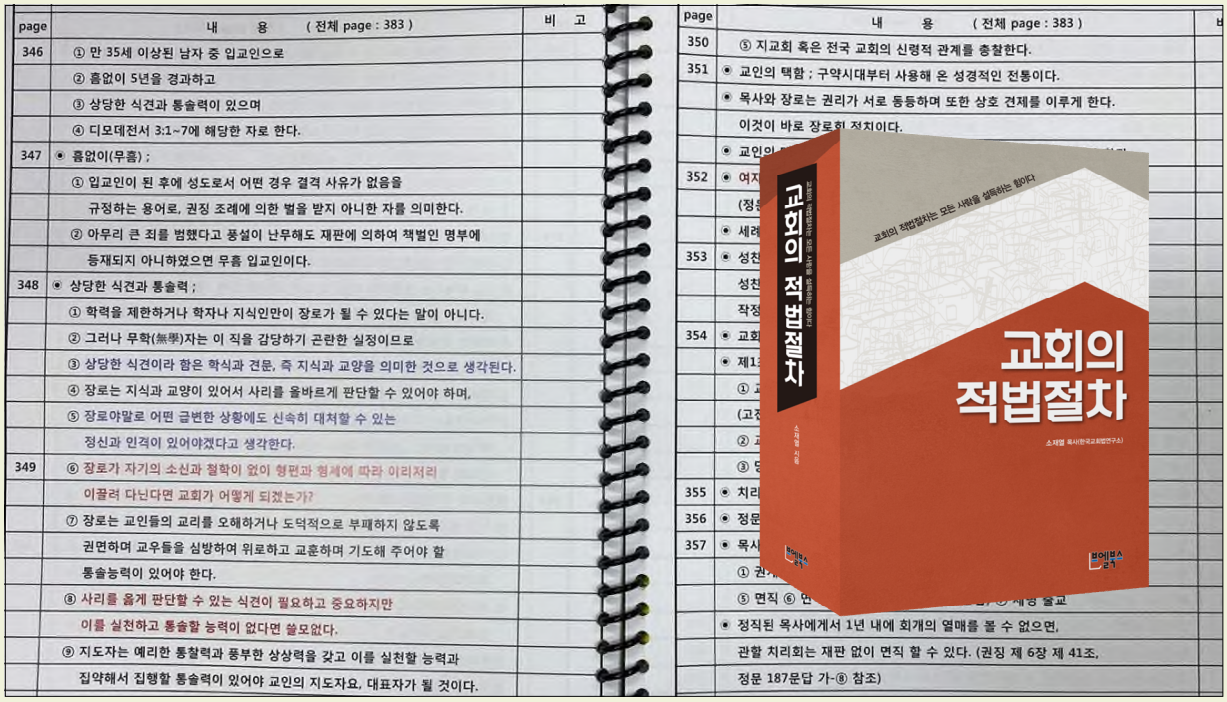

page	내 용 (전체 page : 383)	비 고
346	① 만 35세 이상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②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③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④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	
347	◉ 흠없이(무흠) ;	
	① 입교인이 된 후에 성도로서 어떤 경우 결격 사유가 없음을	
	규정하는 용어로, 권징 조례에 의한 벌을 받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	
	②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풍설이 난무해도 재판에 의하여 책벌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면 무흠 입교인이다.	
348	◉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 ;	
	① 학력을 제한하거나 학자나 지식인만이 장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② 그러나 무학(無學)자는 이 직을 감당하기 곤란한 실정이므로	
	③ 상당한 식견이라 함은 학식과 견문, 즉 지식과 교양을 의미한 것으로 생각된다.	
	④ 장로는 지식과 교양이 있어서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⑤ 장로야말로 어떤 급변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정신과 인격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	
349	⑥ 장로가 자기의 소신과 철학이 없이 형편과 형세에 따라 이리저리	
	이끌려 다닌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⑦ 장로는 교인들의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교우들을 심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기도해 주어야 할	
	통솔능력이 있어야 한다.	
	⑧ 사리를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를 실천하고 통솔할 능력이 없다면 쓸모없다.	
	⑨ 지도자는 예리한 통찰력과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이를 실천할 능력과	
	집약해서 집행할 통솔력이 있어야 교인의 지도자요, 대표자가 될 것이다.	

page	내 용 (전체 page : 383)	비 고
350	⑤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충찰한다.	
351	◉ 교인의 택함 ; 구약시대부터 사용해 온 성경적인 전통이다.	
	◉ 목사와 장로는 권리가 서로 동등하며 또한 상호 견제를 이루게 한다.	
	이것이 바로 장로회 정치이다.	
	◉ 교인의	
352	◉ 여자	
	(정	
	◉ 세례	
353	◉ 성찬	
	성찬	
	작정	
354	◉ 교회	
	◉ 제1	
	① 교	
	(고	
	② 교	
	③ 당	
355	◉ 치리	
356	◉ 정문	
357	◉ 목사	
	① 권	
	⑤ 면직 ⑥ 면	
	◉ 정직된 목사에게서 1년 내에 회개의 열매를 볼 수 없으면,	
	관할 치리회는 재판 없이 면직 할 수 있다. (권징 제 6장 제 41조,	
	정문 187문답 가-⑧ 참조)	

위의 내용은 한 독자로부터 〈교회의 적법절차〉에 대한 책 1,280 페이지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노트로 정리하여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이제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내가 불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본서는 바로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법원의 60년 동안 교회에 대한 판례법리를 담았습니다.

소재열 박사 지음, 1,280페이지, 60,000원
주문 : 한국교회법연구소 (031) 984-9134

교회법과 국가의 각종 법령에 따라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본서는 교회법과 국가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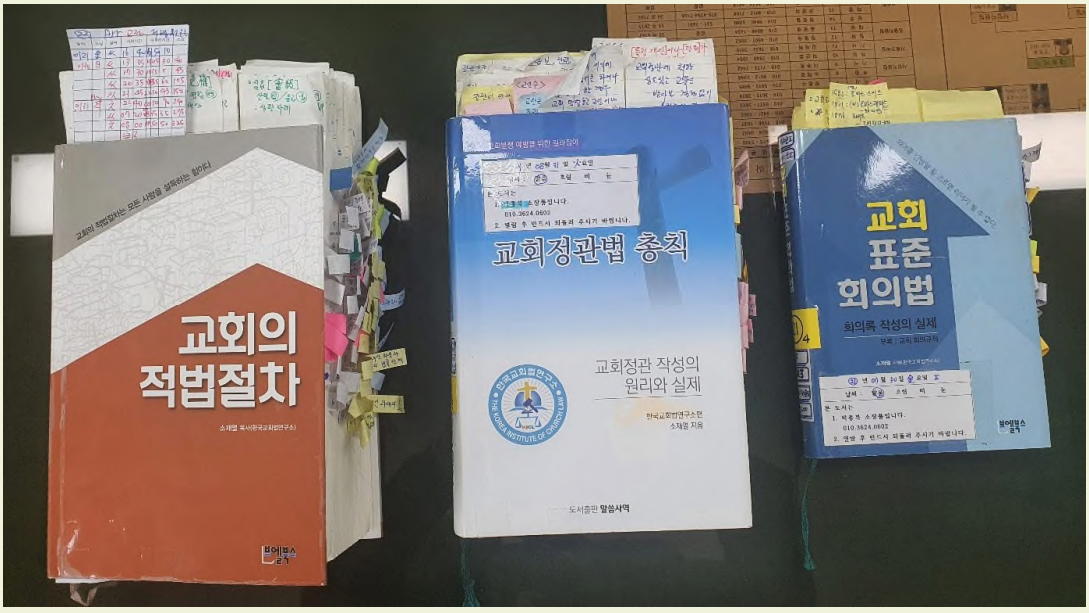

▲ 독자가 이렇게 소재열 박사의 저서를 공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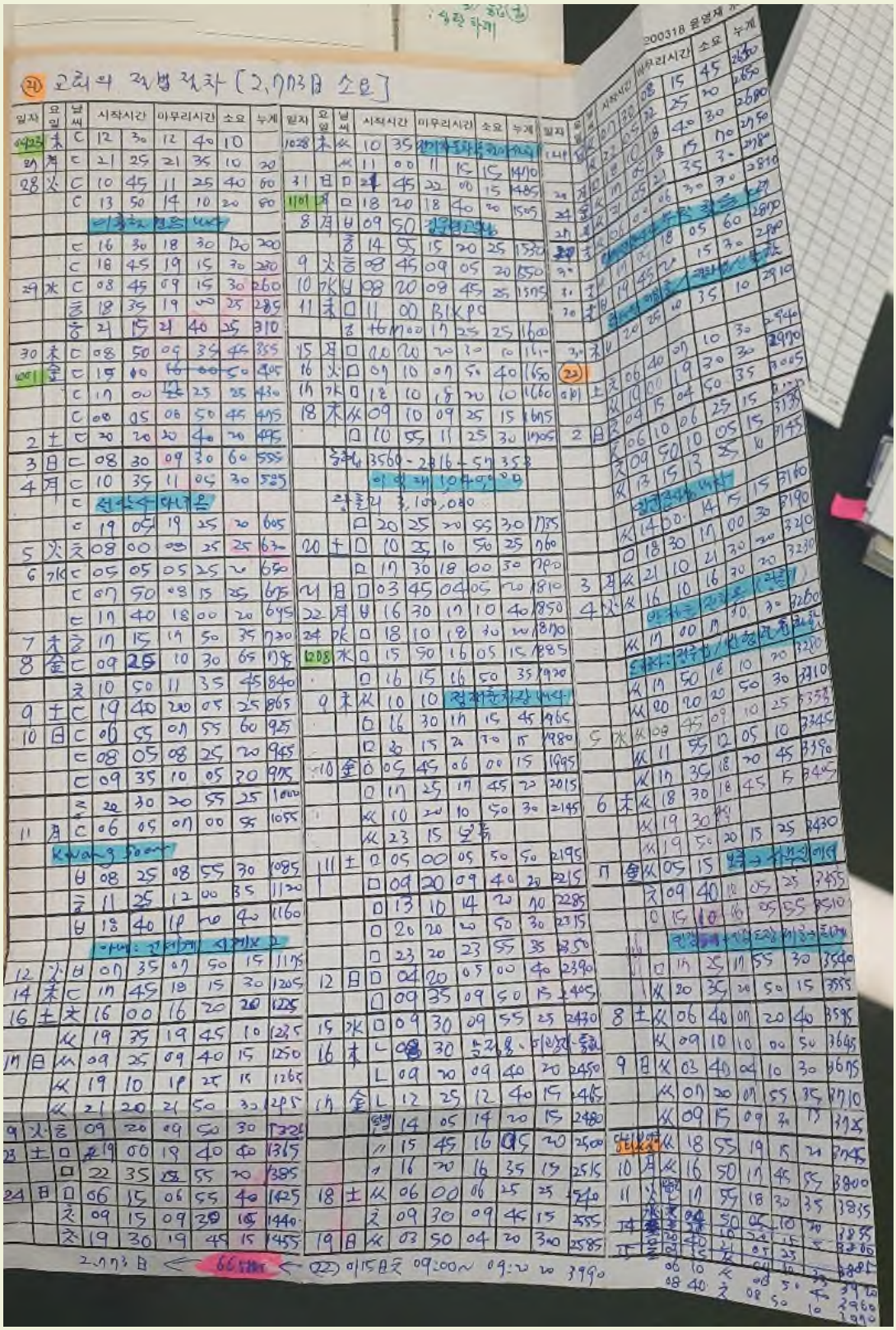

전남 광주광역시의 한 독자인 장로님이 〈교회의 적법절차〉 읽기표를 작성하여 1280페이지의 내용을 정독하면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교회 부동산 실명제법과 명의신탁

1. 들어가면서

교회 재산은 교회 총유권자의 소유재산이다. 민법은 이를 공동소유재산이라 한다. 공동소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개인은 지분권과 처분권이 없는 재산이다. 단지 재산을 처분하는 교인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총유 재산에 관해 사용·수익할 수 있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이므로 반드시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실제 명의자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은 주택이나 토지 등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게 하는 법률이다. 이 제도는 부동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되도록 거래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된다.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을 하여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도록 한 사람, 즉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다.

교회는 실명자인 교회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교회마다 '부동산등기용 고유번호'를 지자체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교회 명으로 등기할 수 있다. 다음은 등기와 관련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이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 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실명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교회가 실권자일지라도 소속 교단의 유지재단으로 등기하여 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렇지만 현행 부동산실명법에는 교회 소유재산을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 혹은 장로, 권사 개인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이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된다.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교회명으로 등기하여야 하며, 교회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은 편법으로 매입할 수 없다.

2. 실명제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약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주택이나 토지 등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게 하는 법률이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부동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되도록 거래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된다.

명의신탁은 탈세나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재를 받는다. 이 법률은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탁이란 신뢰 있는 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부동산실명법 제2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부동산명의신탁을 진행했다면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5억 원 미만이라면 5%, 30억 원 미만이라면 10%, 30억 원 이상이면 15%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최근 법률의 개정에 따라 납부 기간 내에 과징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산금까지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 등) 제1항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회 소유재산을 교회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인으로 등기한 것은 해당 법률 위반이다.

3. 교회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

교회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교회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보통 담임목사가 개척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은 담임목사가 청빙 받아 목회하는 경우의 교회에서 교회 실권을 가진 장로나 권사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교회가 농지를 매입하면서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모두 부동산실명법의 위반이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당연히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명의를 제공한 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교회 부동산을 장로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장로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다. 이는 당연히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 위반이다. 그 장로가 소천하자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아 처리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며 장로 명의로 등기했을 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증거이며, 교회 재원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끝없는 소송으로 이어지며, 교회가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뒤따라온다.

현재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으로 등기된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을 처리하고 수탁자인 당사자는 처분한 금원을 교회에 헌금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교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이면 교회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와 같은 부동산은 부동산실명법의 위반이므로 하루빨리 처분하여 교회 헌금하는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4. 나가는 말

교회는 국가의 각종 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유재산을 관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교회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 예컨대 농지와 같은 부동산은 취득하면 안 된다. 교회가 취득할지라도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때 편법으로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다. 이는 법률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이 따라온다.

이러한 법적인 상황에서 교회는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교회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문제 되지 않았을지라도 누군가가 이를 신고하면 반드시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되어 입건될 수 있다. 교회는 법을 지켜야 한다.(*)

‘시찰회’와 ‘시찰위원’은 다르다

시찰회 경유가 아닌 시찰위원 경유

1. 서 론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제도는 3심제의 치리회이다. 지교회 소속 목사와 지교회가 파송한 장로 총대로 구성한 노회는 총회가 확정해 준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로서 지역과 상관없이 무지역노회가 있다. 무지역 노회는 이북지역의 노회로 구성된 노회이다. 따라서 이북지역 노회는 남한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이를 무지역노회라 한다.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는 장로”로 구성하며 노회 조직은 21 당회 이상을 요한다.[11] 미조직교회는 노회 조직 요건이 포함하지 않는다. 노회 조직을 위해 미조직교회 100개보다 1개 당회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12]

노회 직무의 방조를 위해 시찰위원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정치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시찰위원 제도를 두어 노회가 폐회한 후 각 지역에 시찰위원 제도를 두어 노회 직무를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로회 헌법은 시찰위원인데 헌법에도 없는 시찰회라고 말한다. 헌법에는 없지만 각 노회는 노회의 행정 구역 내에 각 지역에 시찰위원 제도를 두고 있다. 시찰할 대상 지역과 인원은 노회가 결정한다.

노회는 행정 편의상 각 시찰회 단위로 조직하여 운영하며, 각 시찰회는 시찰장을 두고 있다. 이 시찰회는 헌법에 없는 임의기관이다. 시찰회와 별도로 헌법이 규정하고 노회가 임명하는 시찰위원이 있다. 시찰위원은 곧 시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찰회 안에 시찰위원이 있는 조직이 아니다. 시찰위원은 헌법이 보장한 제도라면 시찰회는 노회가 임의로 조직한 단체이다. 따라서 각 지교회의 노회 청원서 경유는 시찰회가 아니라 시찰위원이다.

시찰장이 곧 시찰위원장으로 겸직할 수는 있어도 시찰장이 곧 시찰위원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찰장과 시찰위원장이 서로 다른 사람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즉 시찰장 따로 시찰위원장 따로 선임할 수 있다. 시찰회와 시찰위원회의 회의는 전혀 다르다. 시찰회를 종료하고 별도로 시찰위원회가 모여 헌법이 보장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시찰장은 헌법에 없는 행정 편의적 조직이므로 시찰장은 위임목사가 되든 시무목사가 되든 그것은 노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

1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Ⅳ. 정치 제10장 제2조.

12) 통합 측 헌법은 노회 조직이 합동 측보다 더 엄격하다. 통합 정치편 제73조 노회의 조직에 의하면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는 시찰장은 위임목사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은 법리 오해이다. 마치 시찰위원회가 시찰회인 줄 착각한 것이다. 시찰위원장은 둘째치고 시찰위원은 조직교회 위임목사 중심이어야 한다. 시찰위원장은 시찰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렇다면 시찰위원은 조직교회 위임목사여야 하므로 시찰위원장은 당연히 조직교회 위임목사이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가 조직교회와 위임목사를 시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찰위원의 직무에 의하면 시작위원은 당연히, 의례히 조직교회 위임목사여야 한다.

그런데 마치 시찰위원이 시찰회로 착각하여 시찰장은 위임목사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은 문제가 있다.[13] 그리고 지교회 청원서의 노회 경유는 시찰회가 아닌 시찰위원회이다. 시찰회 서기가 시찰위원회 서기직을 겸직할지라도 시찰회 서기가 아닌 시찰위원회 서기에게 서류를 접수하여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초로 시찰위원을 규정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규측〉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은 1921년에 공포되고 1922년에 출판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1912년 9월 1일에 창립되었으므로 총회 조직 이후에도 1921년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규측'을 사용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공의회 규칙준비위원회는 1905년에 규칙을 임시로 제출했다. 그런데 공의회에서는 1년 동안 더 연구하기로 결정했다(곽안련,『長老教會史典彙集』,41.). 1906년에도 1년 동안 보류키로 했다. 1907년에 제출했지만 거부되었으며, 인도 장로교회의 정치규칙을 수정해서 채택되었다.

간단한 정치를 제정하여 제출하였다. 이미 공의회는 웨스트민스터 정치편을 번역하여 준비해 두었지만 독노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노회는 간단하게 만들어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에서 사용하였다. 규칙위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정치를 고집하고 공의회 회원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결국 인도 장로교회의 정치규칙을 가져와서 채택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은 전문 5조 14항과 세칙 7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는 교회, 제2조는 예배절차, 제3조는 직원, 제4조는 교회의 치리, 제5조는 규칙 개정에 대해서 다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은 한국장로교회의 첫 헌법으로 이후 제정되는 헌법 중 정치제도적인 부분의 기초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규측〉에 규정한 시찰위원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규측

뎨ᄉᆞ됴 교회의 치리

三. 로회의 직무와 권리

ㄷ. 로회가 시찰 위원을 션뎡ᄒᆞᆯ수잇ᄂᆞ니 이 위원은 당회와 지교회와 조직ᄒᆞ지아니ᄒᆞᆫ 교회에 가셔 시찰ᄒᆞ며 목ᄉᆞ를 고빙ᄒᆞᄂᆞᆫ것과 목ᄉᆞ가 업슬때에는 강도ᄒᆞᆯ쟈를 쳥ᄒᆞᄂᆞᆫ것과 모든 일에 ᄃᆡᄒᆞ야 의론ᄒᆞᆯ거시라 이러ᄒᆞᆫ 위원이라 혹 로회에셔 션경ᄒᆞᆫ 특

13) "서평양노회에서 보내온 폐당회된 위임목사 신분으로 시찰장 및 위임국장 직책을 맡을 수 있는지 질의건은 헌법 제9장 제1조와 제103회 총회 결의에 의거 시찰장과 위임국장이 될 수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총회 임원회 제8차 회의, 2020. 12. 21)

별 위원은 당회에셔 목사를 고빙ᄒᆞᆫ 일에 ᄃᆡᄒᆞ야 합당ᄒᆞᆫ 여부를 사실ᄒᆞ며 목ᄉᆞ와 강도인이 어ᄂᆞ 교회를 맛흘거슬 사실ᄒᆞ며 아모 일이던지 로회 지휘대로 알아보아 작명ᄒᆞᆫ후에 로회에 보고ᄒᆞᆯ거시니라 로회가 이 위원의게 목ᄉᆞ와 인허 강도인 세울 권리를 줄수 잇ᄂᆞ니라

위와 같은 시찰위원은 미국 장로교회에는 없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는 이 제도를 두어 노회의 지휘를 받게 했다. 당시 한국장로교회의 상황이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보다 미조직교회가 많은 상황이어서 지교회의 위치가 확고하지 못했기에 실제 모든 관리를 선교사들의 주도하에 노회에서 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대한예수교 쟝로회 규측〉에서부터 현재까지 '시찰회'가 아닌 '시찰위원'이었다. 노회가 직접 관리하는 노회 산하 시찰위원 제도를 두었다. 시찰위원은 노회와 별도의 회가 아닌 노회 상비위원 개념이었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시찰위원 제도

현행 헌법은 1918년에 공포된 헌법으로 현재 헌법의 정치편 제10장(노회) 제6조 9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9.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선택하여 지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한다.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 청원을 가납(可納)하거나 목사에게 직전(直傳)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 하는 동안 임시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 그러나 허위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또 그 지방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할 처소와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10항에서는 노회가 시찰위원에게 "임시로 목사를 선택"하게 할 수 있고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규정은 노회가 시찰위원에게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때에 시찰위원이 허위교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그러나 노회가 노회규칙으로 혹은 노회 결의로 임시 당회장 파송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노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14] 제10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시찰 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 시찰 위원은 교회의 청함이 없을지라도 그 지방 안에 있는 당회와 연합 당회와 제직회와 부속한 각 회에 언권 방청원으로 출석할 수 있고 투표권은 없다. 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는 시찰과 협의함이 가하다. 시찰 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 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회

14) 교단헌법은 노회가 시찰위원에게 허위교회(담임목사 없는)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노회규칙이나 결의로 시찰위원에게 임시 당회장 파송권을 주지 않았음에도 시찰위원(혹은 시찰회)이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면 이때 임시 당회장은 해당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경우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시찰위원은 노회로부터 위임받을 경우 임시로 설교할 목사를 선택할 수 있고 임시 당회장도 파송할 수 있다. 또한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할 수 있다. 여기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는 직무는 위임목사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시찰위원은 이미 9항에서 "지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시찰하는 직무이다. 미조직교회의 시무목사가 조직교회를 시찰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시찰위원은 조직교회 위임목사여야 한다는 사실은 거부될 수 없다. 시찰위원은 지교회 당회에 언권 방청원으로 출석할 수 있다. 시찰위원은 노회로부터 시찰구역의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하며, 당회나 교회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시찰위원은 노회가 위임해 준 시찰 구역 내 지교회의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노회에 제출하는 각종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이를 시찰위원 경유권이라 한다. 이 경유는 지교회의 직접 청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 노회를 돕는 상비위원으로서 시찰위원은 지교회의 청원서에 대한 서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기각하는 권한은 없다. 단지 보정할 수 있도록 지돟하여 합법적인 청원서가 되도록 행정적인 도움을 주어 노회 직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방조하는 다음과 같은 직무가 있다.

11. 시찰 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하여 교회의 신령상 형편과 재정 형편과 전도 형편과 주일학교 및 교회 소속 각 회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결과 있고 유익하게 역사하는 여부와 그 교회 장로와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의 제출하는 문의(問議)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시찰회 경유가 아닌 시찰위원 경유이다. 시찰위원은 시찰 대상 지역 전체의 목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노회가 정한 인원으로 제한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측)은 다음과 같이 시찰회와 시찰위원회를 명문화 하고 있다.

제11장 노회

제81조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1. 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일정 규모로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할 수 있고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회원 중에서 선임된 자들로 구성되는 시찰위원회를 둔다.[15]

통합 측은 지교회가 노회에 청원하는 모든 청원서는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통합 측 헌법은 시찰회와 시찰위원회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합동 측 헌법은 시찰회란 규정이 없고 오직 시찰위원만 있다. 이러한 규정이 초기 장로회 헌법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통합 측은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시찰회와 시찰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시찰위원 제도는 미국 장로교회에는 없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 장로회에는 있는 제도이다. 합동 측은 추후 이 부분에 대한 헌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맹점 때문에 시찰회인지, 시찰위원인지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서로 언쟁하고 있을 뿐이다.(*)

1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 정치편, 제11장 제81조.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고린도전서 6:1-11

본문 / 고전 6:1-11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5:9-13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라는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왜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쫓으리라는 말씀은 오늘날 '출교'에 해당합니다. 물론 회개하면 됩니다. 모든 징계, 즉 권징(권선징악의 준말)은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작은 누룩이 되어 교회 전체에 확산하여 교회가 커다란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런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교회의 본질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교회는 특정 국가 안에 존재합니다. 국가 안에 존재한 교회는 국가법과 교회법을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영역과 국가 영역에서의 소송의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소송 문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1-7).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까지 고린도 교회 성

도들에게 7가지를 질문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책망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탐욕으로 인한 과도한 소송, 즉 고소·고발에 대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은 두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책망합니다. 사도는 이러한 소송은 결국 복음에 대한 오명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교회의 본질인 거룩성이 훼손된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차라리 성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고통을 참고 소송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호소해야 합니까? (1)

본문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책망한 책임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형식을 통하여 책망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이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감히'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의 불신자에게 맡기고 호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모욕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성도들'과 '불의한 자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불경건한 자들은 복음의 가르침 속에서 무엇인가 결점을 발견할 기회를 언제나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신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내놓으면 그들은 교회를 조롱할 수 있는 황금 기회로 포착하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법정에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기를 회피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칼빈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의 법정에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기를 회피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 "바울은 여기서, 불가피한 경우에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법에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책망하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해결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으로 믿는 형제들을 불신앙의 세상 법정에 먼저 고소하는 것은 잘못이다."

칼빈은 그러나 "만일 당신을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순서상 법정에 출두하여 당신의 사건을 해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적용한다면 믿는 신자들이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느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세상을 심판할 성도들이 그 정도 사소한 사건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2)

본문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종말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마 19: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심판권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배심원과 같은 성도들도 이 심판에 참여합니다.

장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서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해결 능력이 없어서 세상 법정인 불의한 자들에게 교회 문제를 맡기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문제해결을 포기하고 불신자에게 이를 맡긴 일에 대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혹은 교인들 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음 안에서 해결하고 판단(판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길인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들도 판단할 성도들이 이런 일 하나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3)

본문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일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에 동참할 성도들은 천사들도 심판하는데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계된 사건들을 심판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갈 1: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장차 미래에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세상 법원에 맡길 수 있느냐는 책망입니다.

넷째, 교회 문제에 세상 재판관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4)

본문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서야 되겠느냐는 사도 바울의 책망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다툼을 판정해 주도록 불신자들을 심판자로 세우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교회 내 교인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5)

본문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합니다. 사도는 계속 책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문제,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임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는데 자기 형제들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여섯째, 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6)

본문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합니다. 신자가 신자를 고소하여,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겠느냐는 질문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의 문제, 교인들 간의 문제와 갈등을 조정하고 판단해 주고 해결해 줄 지혜로운 자가 있기는커녕, 형제와 형제, 신자가 신자와 더불어 송사합니다.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송사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차라리 소송하지 말고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7)

본문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라리 소송할 수 있지만 소송하지 않고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소송은 결국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이 사랑과 정의를 압도해 버렸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송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송사로써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랑과 정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송사에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승리가 아닌 패배를 의미합니다.

2.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저는 너의 형제로다"(8)

본문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합니다. 소송의 상대는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소송, 즉 고소·고발을 통해 불의를 행하고 상대를 속입니다. 소송을 통해 스스로 불의를 행하면서 속여 빼앗습니다. 그것도 교우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격렬하게 고린도 교회에 책망한 이유는 부당한 탐욕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너희 형제로다"라는 말씀은 소송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악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소송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상대를 세상 법정에 고소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3.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악의 목록(9-10)

첫째, 죄악의 목록들입니다(9).

본문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오늘날 모든 죄악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연애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여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고소하면서까지 악을 계속하고자 하는 시도의 악행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악행의 모습, 불의한 모습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한 자'는 본문에서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소하면서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이란 말씀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내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대 전제하에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결국 악행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 "탐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탐색"이란 헬라어 '말라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볍고 얇은 의복을 지시합니다. 이 의복은 부자나 지위가 높은 자들이 입었습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도덕성과 연관되어 사용할 때는 자신을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에 던져 버리는 자들을 지시합니다. 이들은 방종을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탐색은 방탕과 육체적인 쾌락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방종과 음행은 탐색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런 탐색이 고린도 지역에 팽배해 있었으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바로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색하는 자"란 헬라어 단어인 '아르세노코이타이'는 이교도들에게 흔한 악행들입니다(롬 1:27). 이런 악행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는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악들이 있습니다(10).

본문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합니다.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둘째, '그러나'라는 단어를 세 번 사용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11).

본문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너희 중 몇은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일부 신자를 의미하면서도 전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는 그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였을 뿐입니다(칼빈).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나 씻겼고, 그러나 거룩해졌고, 그러나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강조의 효과를 위해 세 번 되풀이하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고전 12:13). 그때 그들이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9절에서 나열한 죄 목록을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법정에 쟁송은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증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명령입니다.

4. 교훈과 묵상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주어진 기본권을 박탈 내지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의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 청구는 고소·고발로 이어집니다. 교회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 교회에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소송의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로 나에게 주어진 권리로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소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교회 안에서 교회 담임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마 18:15-16정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계속하 여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회에 말하고"라는 말씀은 교회 치리 기관(징계기관)을 의미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 치리 기관이 당회입니다. 교회 당회의 권위가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 당회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회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당회가 분쟁이 발생하면 교회 분쟁이 일어납니다. 법원 소송으로 가지 않고 교회의 권위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는 불행한 일입니다.

소재열 목사(김포 새사랑교회)

신비의 계시 로마서

소재열 지음, 브엘북스 刊, 960쪽 4000원

칼빈은 "성경은 로마서에 비춰볼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로마서의 신지식의 근거는 신적 계시에 두고 있다. 로마서는 종교개혁자들의 가슴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는 종전의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와 함께 교회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었다.

이신칭의 교리는 성경의 신적 계시와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이 두 교리를 이해하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신득의 교리는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에 근거하고 있다.

로마서는 "신적 계시"에 근거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한다(갈 1:12).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3년을 지냈다(갈 1:17~18). 비기독교인들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여 깨달은 바를 전하여 바울의 종교를 창건했다고 이를 기독교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다고 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말씀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롬 1:7)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의 구원 계시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유대인들의 논리를 반박해야 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론을 반박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리를 말해야 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의 조건인 율법 준수를 반박해야 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관해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로마서는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 이에 근거한 이신칭의 교리를 신적 계시로 설명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이다. 이런 관점은 로마서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명제를 남겼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구원받은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혹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관점으로부터 로마서를 리딩해야 한다.

[역사]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제1회

총신 이사회와 총회 임원 연석회의에서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5회 총회(1960. 9. 22.)는 두 번의 정회와 두 번의 속회로 기록된 총회이다. 이는 고신 측과 합동하기 위한 절차 때문이었다. 제45회 제2차 속회에서 고신 측과 합동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합동 측'이 되었다. 제2차 합동 속회 총회는 장로회 측 총대 233명, 고신 측 총대 130을 합하여 363명이 출석했다. 노회는 장로회 측 29 노회, 고신 측 6 노회 총 35 노회였다.

이듬해인 제46회 총회(1961. 9. 21.)는 부산남교회예배당에서 고신 측인 한상동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제46회 총회 이틀째 오후 회무까지 계속 소란과 논란으로 이어졌다.

△ 제45회 총회(1960. 9. 22.) 제2차 속회 총회(고신 측과 합동 총회)

통합 측과 분열 이후 합동 측 내에서 또 다른 소란이 임했다. 이 소란은 총회 회무 현장에서 있었다. 이 소란은 ICCC 우호 관계 문제와 경북노회 분쟁으로 인한 소란이었다. 본 총회는 I.C.C.C(국제기독교연합회) 우호 관계를 끊기로 하고, 개인이나, 단체들도 단절하기로 했다. 경북노회 분규는 총회에서 특별위원을 조직하여 수습하도록 했다.

제47회 총회(1962년)는 승동교회당에 소집되어 이환수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고신 측과 합동 후 고신 측인 한상동 목사가 총회장이 된 후 이듬해(1962)에는 이환수 목사가 총회장이 되어 회무를 진행했다. 두 교단 합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로 한 해씩 총회장직을 수행했다. 제47회 총회는 총회 조직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제48회 총회(1963. 9. 19.)에는 고신 측이 떠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제48회 총회를 마치고 다음 해인 1964. 2. 25.에 전국 목사 기도회가 개최되었고 1964. 3. 22.에 전국 장로 기도회가 개최됐다.

제44회 총회(1959)에서 통합 측의 분열로 합동 측은 소규모 교단으로 전락할 상황이었다. 장로회 해외 3선교회(미국 북장로회, 남장로회, 호주선교회) 등은 모두 통합 측에 가담하였으며, 그들이 가진 모든 재단과 본국의 원조는 통합 측에 귀속되었다. 심지어 신학교 재단법인 역시 통

△ 총회신학교 교수 및 학생 일동(1962, 용산교사)

합 측이 가져가 버렸다,

합동 측은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신학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소위 무인가 신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남산에서 운영하던 총회신학교를 철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에큐메니칼측 학생들은 대광중학교로 옮겨서 수업을 재개하였고, 총회 측의 학생들만 남아서 수업을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1960년 3월 28일에는 남산 밑에 위치한 대한신학교를 임시 교사로 옮겼고, 그해 8월에는 다시 용산 역전의 교사로 이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신 측과 합동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려 했던 점은 결국 무의로 끝났다. 총회는 고려파가 환원하자 굴욕과 배신감에 젖어 한동안 허탈감에 빠졌다. 이때 교단 일각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일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신학교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자극제가 되었다.

총회 제48회 총회 임원회(총회장 이수현 목사)와 신학교 이사회(이사 노진현, 이환수, 김윤찬, 곡현보, 백남조, 김창인, 양화석, 정순국. 정규오 박기동, 감사 강용성, 문제구)가 연석회로 모여 공동으로 전국 목사기도회를 1964년 2월 5일부터 28일 새벽까지 서울 충현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전국 목사

△ 제1회 목사기도회(아래), 장로기도회(위)

기도회가 탄생하였으며, 이어 전국 장로 기도회(1964. 3. 22.)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965년 제2회부터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회 임원회는 1964년 1월 28일에 전국 목사기도회로 인한 청도 할인권 신청서를 철도청장 앞으로 발송하였으며, 2월 26일에는 전국 장로 기도회 용인 철도 할인 신청서를 철도청장 앞으로 발송하였다. 처음 기도회는 전국 목사기도회와 장로 기도회로 나누어 진행했지만 제2회인 1965년에는 목사와 장로가 한자리에 모여 기도회를 진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국 목사장로기도회의 출발은 총회가 아닌 총회 임원회(총회장 이수현 목사)와 신학교 이사회의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러한 전국 목사장로기도회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2022년 5월 11일은 전국 목사장로회가 진행된다. 총회 임원회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회와 갈등 관계를 접지 않고는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총회임원회(총회장 배광식 목사)와 학교법인(이사장 김기철 목사)은 더 이상 갈등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로 리더십을 평가하는 법이다. 총회장도 임기가 4개월 정도 남았다. 이 기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 보고 만다. 제107회 총회에서 운영이사회 복원 결정 여부에 따라 총회와 총신대학교 이사회는 또 다른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 있다.

이제 총회는 정확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학교법인으로 학교 운영을 포기한다면 차라리 교단총회가 무인가 신학교를 운영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학교법인을 인정하고 그 법인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